

# 우리나라 金融制度 改編에 關한 管見

— 銀行經營과 與信制度를 中心으로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敎授  
經濟學博士 車 軫 權

目	次
I 金融問題의 性格	
II 市中銀行의 收益性	
III 經營不實 原因	
1. 營業損費와 營業收益	
2. 收益資産과 非收益性資産	
	3. 借入金의 急増과 利子負擔
	IV 經營責任의 強化
	V 與信制度의 問題點
	VI 與信制度의 改善方向

## I. 金融問題의 性格

實物經濟의 成長을 원활히 推進하기 위해서는 效率的인 金融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金融機關은 貯蓄者와 投資家사이에서 貯蓄을 預金形態로 吸收하여 이를 投資目的에 配分하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지만 金融機關의 그러한 역할이 效率的으로 行하여 지지 않을때에는 實物經濟의 成長은 阻害된다.<sup>(1)</sup>

오늘날 우리나라의 金融은 開發資金을 動員하는데 있어서나 動員된 資金을 配分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고 3次計劃에서 설정되고 있는 實物經濟의 諸 目標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金融制度의 正常化와 效率化를 中心으로 하는 金融再編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있다.<sup>(2)</sup> 여기서 金融制度의 正常化란 모든 金融機關이 全體로서 正常的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狀態로의 改編을 의미하고, 效率化란 하나의 企業으로서의 金融產業이 資源의 浪費나 非效率的인 配分을 수반하지 않고 本然의 기능을 遂行할 수 있게 하는데 必要한 體質改善이나 競爭力強化를 의미한다.

最近年間 우리經濟는 實物面에서 急速한 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하였던 金融制度의 發展은 不振하였다. 물론 이는 그간 金融制度가 成長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金融部門의 기능이 擴大됨에 따라 成長制約的 要因이 增大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長期投資資金의 主要한 供給者로써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여 온 特殊銀行은 資金不足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으나 一般銀行은 特殊銀行이 담당하여 온 役割을 맡아 開

1) J.G.gurleg and E.S.show, Money in a theory of finance, 1960, PP. 33~50

2) 韓國經濟開發協會, 金融產業改編 問題에 關한 研究報告書, 1970, 3. PP. 4~11

發金融에 參與할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投資需要의 지속적인 增大에 대응하여 貯蓄 또는 資金源泉은 이미 外換에서 借款으로 또 借款에서 國內貯蓄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國內 金融機關은 貯蓄과 投資를 매개하는 役割을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企業으로서의 金融產業은 實物經濟에서 發生된 非能率과 產業政策 등의 非合理的인 운영때문에 非正常的이고 非能率的인 문제점을 많이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貸出資金의 延滯現象이나 低利政策金融, 逆金利體系, 外資導入에 따르는 內資調達을 위한 金融資金需要의 增大 外債에 대한 支給保證의 增大와 그에 따르는 偶發的負債의 增加, 非效率的인 與信의 配分 등 여러가지 문제는 모두 金融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金融外的인 要因과 環境의 未備로 인하여 非金融部門의 문제가 金融部門의 秩序를 물란케 하여 金融의 非正常 및 非能率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sup>

“흔히 論難되는 金融部門의 病弊라는 것도 그 根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實物經濟에서 發生된 非能率과 余他政策의 非合理的 運營의 產物이라 본다. 企業의 過多한 外部資金依存度와 銀行融資延滯現象은 根源的으로는 投資配分과 關聯된 產業政策의 非合理性에 기인하는 것이다. 輸出을 위시한 基幹產業育成이라는 政策때문에 低利金融을 制度的으로 强要하게 된 政策의 支援方式은 限定된 可用金融資金의 乏逼을 가져왔고 金融秩序를 교란하는 根源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金融問題가 모두 그 根源이 他部門에 있고 金融部門 自體에는 전력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金融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단지 金融制度의 正常化 내지 效率化를 기하기 위한 制度改善이나 金融政策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性質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는 바이다.

## Ⅱ. 市中銀行의 收益性

最近年間 市中銀行의 收益性은 계속 低下되어 왔다. 70年度 下半期의 市中銀行 自己資本收益率은 5.7%로써 68年度 下半期以後 70年度 上半期까지 계속 5%를 前後하는 低調한 收益率에서 벗어 나기는 하였으나 70年 下半期 收益 12억6千萬원 중에는 支準附利 9억4千5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除外하면 5개市銀의 收益은 3억원을 下廻하게 된다.

市中銀行의 이와 같은 收益率의 低下는 金融政策에 의한 資產運用의 規制에도 部分的인 原因이 있으나 그러한 外的 要因과 함께 銀行經營의 不實에도 그 原因이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4)</sup> 市中銀行이 高度成長 過程에서 高率의 支準, 開發金融에서

3) 西江大學附設, 經濟經營問題研究所, 韓國金融市場과 企業投資에 關한 研究, 1970, 11, P. 119

參與, 政策金融의 擴大, 非收益性 有價證券의 引受 預貸金利의 實質的인 역 「마진등」 經營外的인 要因에 (5) 큰 영향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銀行監督院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市中銀行의 收益率이 減低되기 시작한 原因은 첫째, 非收益性 資産의 過度한 保有, 둘째 借入金의 急増, 셋째 延滯貸出金의 累増, 넷째 무리한 支給保證에 따르는 代拂發生, 다섯째 自律性의 缺如에 있고 그밖에 預金誘致를 위한 過當競爭, 不動産 投資를 겸한 店舖競爭등도 不實한 經營의 原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6)

市中銀行의 自己資本 利益率

(表 1) 단위: %

年度 半期別	1966	1967	1968	1969	1970
上半期	13.9	8.0	8.0	5.2	4.8
下半期	10.5	7.9	5.1	5.3	5.7
平均	12.2	7.9	6.6	5.3	5.2
(製造業)	16.93	17.01	16.05	13.56	N.A.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 一般金融의 效率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971. 2. P. 17,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69.

最近 關係當局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70年 上半期 外國銀行支店, 地方銀行, 5個市中銀行의 自己資本 利益率은 25%, 13%, 9.5%에 각각 달하고 있어 市中銀行의 利益率이 매우 낮지만 資産構成面에서 볼 때 貯蓄性預金 對 要求拂預金의 構成比가 다같이 7對3정도이고 또 預貸利의 差異는 같은 點에서 미루어 보아 市銀의 利益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原因은 市銀의 店舖擴充등 人員과 機構를 過度하게 늘이고 있는 經營의 不實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7) 바꾸어 말하면 68年 이후 市銀의 利益率이 低下된 것은 지금까지 높은 支準率에 의한 運用資産의 동결이나 資金「코스트」가 높은 貯蓄性 預金의 增大등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러한 經營外的인 原因보다 不實한 與信管理나 店舖 경쟁등에 더 큰 原因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69年 上半期 決算資料에 따라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의 經營指標를 비교하여 보면 市中銀行의 利益率이 낮은 原因의 일단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營業收益에 대한 營業損費

4) Hugh Patrick 教授는 5개 市中銀行의 金融媒介機能이 弱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This results from a long and complex history of banking in Korea and particularly from the government take-over of commercial banks in the early 1960s. The commercial banks have very little incentive to operat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nd also have little opportunity to do so since they are under such great government pressure, both direct and indirect".

5) Hugh Patrick, Thought on Korean monetary and financial research policy, memo Yale University, 1970, P. 15.

6) 韓國經濟開發協會, 前掲書, PP. 155~162

7) 서울經濟新聞, 高度成長 서울의 外銀들, 1970. 12. 4

의 比率은 市中銀行이 약 8「포인트」가 더 높고 또 預金中 預金「코스트」가 낮은 要求拂預金の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밖에 預貸出金の 增加率도 매우 높다.<sup>(8)</sup>

經營指標의 比較  
〔表 2〕 (1969年 上半期)

區 分	銀 行 別	市中銀行	地方銀行
自己資本利益率		10.4%	11.9~17.9%
營業損費/營業收益		98.1%	90.2%
預金增加		3倍	18倍
店舖當平均預金		8억7천萬원	약 3.8億원
貸出增加		3倍	22倍
要求拂預金比重 (69.11.現在)		22.2%	38.2%

資料: 서울經濟新聞, 1970.1.21.  
“地方銀行의 經營好調”

商業銀行이란 원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企業이며 原則的으로 그 經營은 利潤의 確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公益性을 벗어난 利潤追求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資本과 營業基盤 그리고 歷史를 갖고 있을 市中銀行이 그 規模나 資本이 크지 못하고 그 歷史가 짧은 地方銀行에 비해 낮은 收益率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金融產業으로서 不實한 經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 Ⅲ. 經營不實의 原因

70年 上半期 決算資料에 의해 市中銀行의 經營不實化를 더욱 심화시킨 要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9)</sup>

#### 1. 經營損費와 營業收益

70年 下半期 營業損費는 前期보다 18.3%가 늘어난 反面에 營業收益은 18.1%가 늘어나 營業收益에 대한 營業損費의 比率은 上半期の 98.3%에서 下半期에는 98.5%로 높아졌다.<sup>(10)</sup>

#### 2. 收益資產과 非收益性 資產

71年 3月末 현재 收益資產은 4,650억원으로 前期末보다 736억원 (18.8%增)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總資產에 대한 收益資產의 比率은 前期末 43.7%에서 44%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支給保證, 非業務用資產등 非收益性資產의 比率은 多少 低下되기는 하였으나 支給保證은 前期末에 비하여 약 480억원, 非業務用資產은 68억원 (66.5% 增)이 각각 늘어났다.

營業收益은 主로 收益資產의 運用에서 생기기 때문에 總資產에 대한 收益資產의 比率이 낮은 것은 그만큼 資產運用이 合理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11)</sup>

8) 서울經濟新聞, 「地方銀行의 經營好調」 1970.1.21

9) 韓國經濟開發協會, 「一般金融의 效率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971.2. PP. 86~112.

10) 每日經濟新聞, 資產 1兆의 不實化, 1971.4.23.

5個 市銀計定 殘額

[表 3]

단위: 억원

區 分	70年上半期	70年下半期
貸 出 金	3,705	4,448
支 保	3,049.4	3,529.1
代 拂	53.98	70.94
固 定 資 產	187.91	198.2
有 價 證 券	209.6	202.8
비업무용 자산	87.2	145.4
借 入 金	795.6	899.9
借入金利子	21.08	56.90
「콜 마 니」	148.3	93.5
「콜 마 니」利子	14.40	16.92
營 業 損 益	481.7	569.1
營 業 損 費	473.6	560.5
營 業 利 益	8.07	8.58
當 期 純 益	11.8	12.58
總 資 產	8,942.9	10,530.8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3. 借入金의 急増과 利子負擔

71年 3月末 市銀의 借入金규모는 899.9억 원이며 이는 前期末보다 104.3억원 (13.1% 增) 이 늘어 났다. 한편「콜·마니」는 年初의 支準率引下에 따라 약 120억원에 달하는 資金이 解除되어 그 殘額은 前期末보다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期中「콜·마니」利子は 前期에 비해 약 2억5천원이 늘어 났고 借入金利子は 21 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늘어나 70年 下半期에 5개市銀이 負擔한 利子は 前期의 35억원에서 73억 8천만원 (108% 增) 이나 늘어나 市銀의 收支를 惡化시키는 큰 要因이 되었다.

이와같이 市銀이 期中 막대한 借入金과 「콜·마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非收益性 資產을 過度하게 保有하고, 支給保證의 增大에 따르는 代拂의 增加, 延滯의 累增(全金融機關의 延滯貸出率 11%를 上廻하는 市中銀行의 延滯貸出率 14% 線) 과 그에 따르는 非業務用 資產의 增加등에 따라 市銀의 財源調達에 있어서는 借入金の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借入金利子가 늘어나 收支를 惡化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市銀의 開發金融에의 參與나 流動性規制 그리고 特殊銀行이 財源調達을 위해 預金銀行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됨에 따라 市銀의 預金市場占據率이 낮아진 것 (65年末 70.4%70年末 65%) 등도 市銀이 財源調達에 있어서 借入金 依存度を 높이게 한 制度的인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12)

IV. 經營責任의 強化

金融產業으로서의 市中銀行이 經濟性 收益性原則에 따라 운영되고 또 현재 더 深化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市中銀行의 經營을 正常化 내지 效率化시키기 위해서는 財政部門과 海外部門 그리고 政策金融에 수반되는 過制流動性을 市銀에 대한 각종 流動性規制나 資金運用의 制限을 통해 조절하거나 開發財源調達을 위한 特殊銀行의 一般銀行化등

11) 每日經濟新聞, 資產1兆의 不實化, 1971.4.23

12) 每日經濟新聞, 慢性化된「오바·론」, 1970.7.30參照

制度的인 要因도 改善되어야 할것이지만 그와함께 市銀의 經營을 改善하기 위해 自律性이 最大化로 保證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應分의 責任을 지도록 하는 經營管理制度의 改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3)</sup>

財務部는 이미 70年 3월에 「金融業務刷新 8個 原則」을 마련하여 實施하므로써 責任經營을 강조하는 方向을 설정한 바 있고 이어 同年 10月에는 金融正常化 10個 原則을 정하여 金融秩序를 바로 잡기 위한 「가이드 포스트」를 설정한 바 있다.

「金融業務의 刷新方案」은 貸出 健全化에 力點을 두고 다음과 같은 原則으로 構成되어 있었다.<sup>(14)</sup>

- ① 貸出業務改善에 의한 金融의 效率性提高
- ② 貸出에 있어서 自律性 保障
- ③ 一般銀行은 主로 運轉資金을 공급하되 用者方式은 一般 業어음 割引으로 誘導
- ④ 貸出審査制度의 혁신에 의한 不健全한 貸出의 事前豫防
- ⑤ 貸出資金의 事後管理強化에 의해 他用途에의 流用 規制
- ⑥ 貸出資金을 기한내에 상환하는 金融習慣의 확립과 貸出資金의 回轉率 提高
- ⑦ 優良企業에 대한 用者지원
- ⑧ 金融機關의 業積評價을 위한 貯蓄收益, 資產運用의 健全度等 基準의 설정

한편 70年 10月에 제시된 金融正常化 10개 原則은 支準不足率, 預金增加率, 貸出金回轉率, 貸出金延滯比率, 商業어음取得率, 不良債權率, 代佛金比率, 代出金중 未收利率, 收益率, 事故發生率등을 모두 計數化하고 그에따라 銀行업적을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銀行經營의 綜合的인 指標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70年 下半年 決算資料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銀行의 收支는 改善되지 않고 있고 非收益性資產의 規模는 아직도 크고 不實企業에 대한 延滯貸出의 激增, 支給保證에 따르는 代佛發生등 經營上의 不實한 要因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그런점에서 經營責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銀行의 自律性이 保障되고 經濟性 利益性의 原則을 존중하고 競爭體制下에서 金融機關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制度的 與件이 먼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V. 與信制度的 問題點

71年 1月末 현재 預金銀行의 貸出현황을 보면 貸出件數는 146萬件을 多少 上廻하고 있고

13) 全國經濟人聯合會, 經協, 市銀 民營化와 金融自律性, 1971.3.4月號 PP. 16~21

14) 서울經濟新聞, 責任經營의 再調整, 1970.2.17.

15) 每日經濟新聞, 金融은 正常化 될까 10개 原則과 그 虛實, 1970.11.3.

貸出金額은 약 7,259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期限 經過分은 件數에 있어서는 약 45萬件 (약 31%) 貸出金額은 약 824억원 (약 11%) 에 각각 달하고 있다. 이를 67年度와 비교하여 보면 期間 經過分 貸出件數나 金額의 비중이 모두 떨어지고 있으나 件當 貸出金額이 커짐에 따라 期限 經過分의 件當 金額도 커지고 있다.

한편 68年 上半期 一般 銀行貸出의 期限別 構成을 보면 總 貸出額 1,558억원에 대하여 3個月 미만 貸出이 45%, 3개월~6개월이 21.6%, 6개월~12개월이 20.9%로써 1年이내의 短期貸出은 全體의 87.5%를 占하고 있었다. 그 反面에 貸出期限이 1年 이상인 貸出은 全體의 6.1%, 延滯貸出은 6.4%를 각각 占하고 있었다. 또 68年 下半期 資料에 의하면 一般 銀行 貸出總額의 96.1%는 1年以內의 短期貸出金이며 1年 以上 期間의 貸出은 3.9%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同期間에 있어서 당좌대월을 除外한 全 貸出金의 回轉率은 年 3.2회이며 이중 改書에 의한 回收額을 除外한 貸出金의 實際回轉率은 1.2回轉으로써 貸出金의 平均 貸出期間은 10개월 정도의 短期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지고 있다.

預金 銀行貸出과 期限經過貸出

[表 4]

	貸 出 合 計		期 限 經 過 分		比 率		件 當 貸 出 金 額	
	貸出件數 (A)	金 額 (B)	貸出件數 (C)	金 額 (D)	(C)/(A)	(B)/(D)	(천원) (B)/(A)	(천원) (D)/(C)
1967	1,098,505	99,835	582,394	17,236	53.0	17.3	90.9	29.6
1968	1,068,630	177,169	517,313	27,292	48.4	15.4	165.8	52.8
1969	1,184,134	305,875	488,167	37,766	41.2	12.3	258.3	77.4
1970	1,305,269	540,400	459,193	68,755	35.2	12.7	414.0	149.7
1971	1,460,822	725,891	449,824	82,396	30.8	11.4	496.9	183.2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0

※ 給付金 除外

이상과 같이 一般 銀行의 貸出은 表面上 主로 短期金融에 倚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어음改書, 期日變更, 延滯등에 의해 貸出이 長期化 固定化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sup>(16)</sup>

그런데 이와같이 既貸出된 資金이 延滯되거나 또는 어음改書 및 期日變更에 의해 固定化 長期化되면 그만큼 貸出金의 回轉率은 低下되고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資金回轉을 저해하고 新規産業에 대한 融資機會를 制限하고 既貸出企業에 대해서도 방만한 資金運用과 不實經營을 助成하게 되는 非效率의인 金融支援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와같이 一般 銀行의 與信이 形式上 主로 短期金融에 倚중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16) 韓國經濟開發協會, 前掲書, 一般 金融의 效率化, PP. 54~61

延滯나 改書에 의해 長期貸出이 되고 있는 不合理한 與信制度는 一般銀行이 制度上 長期金融을 取扱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一般銀行의 貸出慣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一般銀行의 貸出이 주로 貸出種類에 관계없이 어음貸付의 形式을 취하고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어음貸出은 證書貸出에 비해 利子先取, 利子變更의 간편 印紙稅의 절약, 債權의 流動性 및 債權保全의 有利등 利點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 研究報告書는 우리나라 一般銀行의 與信業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銀行經營陣이 保守的이고 安易한 經營態도와 擔保爲主의 容子관리, 企業의 長期展望 및 分析技術의 不足, 長短期金利體系의 不備, 貸出財源의 非彈力性등 여러가지 理由로 인하여 長期金融業務는 一般銀行의 보통적인 與信業務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7)

그런데 실재에 있어서는 一般銀行은 이미 自體 造成資金의 產業移管 產銀發行 產業金融에 引受 產銀保證下의 一般銀行貸出등 形式으로 長期開發金融에 參與하고 있는 것이다.

產銀에(의한 他金融機關)資金의 動員  
(表 5) 1970. 12. 31. 現在 단위: 백만원

區 分	金 額
外貨受託金	5,518
定期預金	19,596
產 金 債	15,206
債務保證	10,744
合 計	51,064

資料: 韓國產業銀行, 調查月報, 1971. 2.

또한 현행 銀行法은 一般 與信銀行 制度에 대하여 첫째, 商業金融業務와 長期金融業務의 兼營을 規定하고 있고, 둘째 商業金融業務이란 要求拂 預金の 受入에 의해 획득한 資金을 1次以內의 期限으로 貸出하거나 金融通貨 運營委員會가 정하는 限度內에서 1次以上 3年 以內의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하며, 셋째 長期金融業務이란 資本金 1年以

上의 期限付 預金, 私債發行에 의해 얻은 資金을 10年以內의 기한으로 貸出하거나 金融通貨 運營委員會가 정하는 限度內에서 10年미만 15年以內의 기한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하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18)

그 뿐만 아니라 長期金融業務中 3年 以上の 貸出은 1年 以下의 割賦納入으로 정기적으로 변제 시키게 돼, 一定期間이 지나서 收入이 생길 事業體에 대하여는 그 期間을 정하여 거치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銀行法이 規定하고 있는 與信制度는 長短期貸出을 區分하고 있고 長期貸出의 경우 割賦納入에 의한 변제方法까지 規定하고 있으나 一般銀行의 貸出慣行은 처음부터 貸出期限을 설정하지 않고 形式上으로 만 3개월의 약속어음에 의해 貸出을 하고 그 後 어음 改書의 반복이나 期限更新에 의해 실재에 있어서는 償還計劃이나 償還期日이 없는 無

17) 韓國經濟開發協會, 前掲書, 一般金融의 效率化, P. 351

18) 銀行法, 第19, 20, 21條

期限의 貸出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한편 觀點을 달리하여 銀行資金을 借入하는 企業의 立場에서 보면 1年 以內의 短期資金 需要보다 1年 以上인 中長期 施設資金에 대한 需要가 더 클 것이지만 68年 上半期의 統計가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1年 以上の 貸出은 全 貸出의 6.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短期資金을 얻어 이를 中長期 設備資金으로 轉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一般 銀行도 長期財源을 조달하여 財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開發金融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며 貸出期間을 現實比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는 最近 年間 一般 銀行은 財源調達面에서도 貯蓄性 預金의 急增에 따라 長期金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 되었고 또 貸出面에 있어서는 이미 長期貸出을 便宜上 短期金融으로 取扱하고 있는 慣行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이미 一般 銀行은 金融債券의 引受等에 의해 長期金融에 間接的으로 參與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 Ⅵ. 與信制度의 改善方向

銀行法の 規定(第19條~21條)과 같이 一般 銀行의 與信을 短期 및 中長期로 區分하여 期限別 貸出制度를 實施하므로써 현재와 같이 形式上 短期金融이지만 實제에 있어서는 長期金融이 되어 銀行이 資金計劃을 合理的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또 資金의 效率의인 配分을 저해하고 資金의 回轉率 鈍化 延滯의 事後 合理化등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다 주고 있는 현재의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하여 金融의 效率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期限付 與信制度의 合理的 運營을 위해서는 貸出金利는 期限에 따라 差等を 두고, 中長期貸出에는 期限更新을 허용하지 않고, 短期貸出에 대하여는 어음 改書에 의한 期限更新을 허용하되 그 回數를 制限하고 期限內에 상환 할 경우에는 金利를 감면 해주고 再貸出을 허용하는등 銀行資金의 원활한 回轉과 市中銀行의 기능확대를 위해 制度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0)</sup>

더우기 市中銀行은 中長期 與信에 있어서는 용자 對象事業에 대한 허가나 差別金利의 適用 및 貸出條件의 결정에 있어서 自律性이 보장되고 또 裁量權이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이미 어음改書의 반복에 의해 貸出期限을 長期化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 「텀·론」制

19) 西江大學, 前掲書, PP. 84~7(一般銀行의 貸出慢行)

20) Hugh Patrick, 前掲書, PP. 16~8

21) 1971年 6月28日의 金利引上 調整에서 이와같은 期限付 金利構造 (Term loans of interest rate)가 채택되었다. 즉 一般銀行의 代表貸出金利(기타어음 貸出金利)는 從前의 24%에서 1年 이내 貸出에는 22%, 1年 이상 3年 이내에는 22.5% 3年 이상 5年 이내에는 23%를 각각 適用하도록 하고 어음改書에 의한 貸出期限의 延長도 制限을 하게 되었다.

도를 實施한바 있으나 이 制度의 特徵은 周知된 바와 같이 貸出期限을 現實化시키되 期限에 따라 差等金利를 적용하고 또 元金の 分割상환을 허용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팀·론」제가 實施되면 金利는 期限에 따라 遞增될 것이므로 低利 短期貸出을 延滯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점에서 貸出期限의 長短에 관계없이 與信管理制度는 不健全한 貸出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